제 1 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 1 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집하여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했다. (총 15집 발간)

2008년에는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언론분쟁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2009년도부터 전년도 언론관련판결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고, 올해는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분석보고서는 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에게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에게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11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11년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

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2011년도 언론 관련 분석대상 판결은 민사 126건으로 매체별 빈도는 170건, 청구별 빈도는 273건

1) 분석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2) '언론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사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법원도서관에서 검색, 수집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은 총 126건이다.

6) 위 126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별로 각각을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빈도는 170건이다.

7) 한편, 위 170건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70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73건이 모수가 된다.

나.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 이용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음성권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제도를 이용하였다.

다. 분석항목

분석 목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구성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4. 손해배상
	17–1. 정정보도	17–5. 기사삭제
	17–2. 반론보도	17–6. 사과
	17–3. 추후보도	
원·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3. 상고심
	18–1. 1심	18–4. 파기환송심
	18–2. 항소심	18–5.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라. 코딩방법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하였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3)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가 ○○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4) 매체별 피고구성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6) 방송 분류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하였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등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KBS 스페셜」, 「미디어 비평」등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7)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9)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 2 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빈도

1심 55.6%, 항소심 27.7%, 상고심 15.9%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빈도를 살펴보니, 1심이 70건(55.6%), 항소심이 35건(27.7%), 상고심이 20건(15.9%),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1건(0.8%)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빈도

심급	빈도	비율(%)
1심	70	55.6
항소심	35	27.7
상고심	20	15.9
환송후심	1	0.8
합계	126	100

2. 상소율

항소율 78.6%, 상고율 71.4%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70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 55건으로 항소율은 7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5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25건으로 상고율이 71.4%로 나타났다.

〈표 1-2〉 상소율

심급	빈도	상소건수	상소율(%)
1심	70	55	78.6
항소심	35	25	71.4

3.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선호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체별로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71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67건(39.4%)으로 나타났다.

정정·손배청구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53건(56.5%), 정정보도청구는 92건(33.9%), 반론보도청구는 15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빈도

청구명	빈도	비율(%)
정정	8	4.7
정정/반론	8	4.7
정정/반론/손해배상	2	1.2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사삭제	4	2.4
정정/손해배상	67	39.4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	2	1.2
정정/손해배상/사과	1	0.6
반론	1	0.6
추후/손해배상	3	1.7
손해배상	71	41.7
손해배상/기사삭제	1	0.6
손해배상/사과	2	1.2
합계	170	100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도	비율(%)
정정보도	92	33.7
반론보도	15	5.5
추후보도	3	1.1
손해배상	153	56.0
기사삭제	7	2.6
사과	3	1.1
합계	273	100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2.5%로 가장 많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명예훼손이 104건(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6건(4.8%), 초상권 침해는 5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침해유형	빈도	비율(%)
명예	104	82.5
명예/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0.8
명예/신용	6	4.8
명예/초상	2	1.6
신용	3	2.4
초상	5	4.0
초상/사생활	1	0.8
초상/사생활/음성	1	0.8
저작권	2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집단적 단결권	1	0.8
합계	126	100

5.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42.9%로 가장 많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54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3건(10.3%), 공적인물 13건(10.3%), 시민단체와 기업이 각각 9건(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원고유형	빈도	비율(%)
공직자	13	10.3
공적인물	13	10.3
일반인	54	42.9
국가기관	6	4.8
공공단체	4	3.2
정당	1	0.8
일반단체	5	4.0
시민단체	9	7.1
종교단체	4	3.2
기업	9	7.1
언론사	6	4.8
교육기관	2	1.6
합계	126	100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은 일간신문, 인터넷매체, 방송 순으로 나타나

소송사건을 피고 언론사별로 나눈 매체별 빈도 170건으로 매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일간신문이 58건(34.1%), 인터넷매체 57건(33.5%)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주간신문 23건(13.5%), 방송 21건(12.4%)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월간지 6건(3.5%), 뉴스통신 5건(3.0%)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42건(72.4%)으로,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16건(76.2%)으로 소송빈도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매체 중에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25건(43.9%)이었고,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언론사닷컴이 32건(56.1%)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체유형	빈도	비율(%)
일간신문	58	34.1
주간신문	23	13.5
월간지	6	3.5
방송	21	12.4
뉴스통신	5	3.0
인터넷매체	57	33.5
합계	170	100

〈표 1–8〉 일간지 종별 빈도

일간지 종별	빈도	비율(%)
중앙종합	42	72.4
지역종합	9	15.5
일반경제	3	5.2
스포츠	2	3.4
특수일간	2	3.4
합계	58	100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유형	빈도	비율(%)
중앙	16	76.2
민방	1	4.8
케이블	4	19.0
합계	21	1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 유형	빈도	비율(%)
인터넷신문	25	43.9
언론사닷컴	32	56.1
합계	57	100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으로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
방송은 뉴스가 대부분

방송매체 2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9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130건(87.2%)으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사설이 4건(2.7%)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칼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13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21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13건(61.9%), 시사・고발프로그램 4건(19.0%), 교양・정보 4건(19.0%)이었다.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빈도	비율(%)
스트레이트	130	87.2
스트레이트/사설	3	2.0
스트레이트/사설/칼럼	1	0.7
스트레이트/사진	1	0.7
사설	4	2.7
사설/논평	2	1.3
칼럼	3	2.0
사진	3	2.0
독자투고	1	0.7
기타	1	0.7
합계	149	1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보도유형(방송)	빈도	비율(%)
뉴스	13	61.9
시사 · 고발	4	19.0
교양 · 정보	4	19.0
합계	21	100

8. 매체별 피고구성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70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언론사가 72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담당이 51건(30.0%)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구성을 직위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언론사가 153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81건(28.5%), 대표이사 15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72	42.4
언론사/대표	3	1.7
언론사/대표/국장/담당	1	0.6
언론사/대표/담당	2	1.2
언론사/국장/부장	2	1.2
언론사/국장/부장/담당	2	1.2
언론사/국장/담당	3	1.7
언론사/국장/담당/비언론	1	0.6
언론사/국장/기타	1	0.6
언론사/부장/담당	8	4.7
언론사/부장/담당/비언론	1	0.6
언론사/차장/담당	1	0.6
언론사/담당	51	30.0
언론사/담당/비언론	1	0.6
언론사/비언론	3	1.7
언론사/기타	1	0.6
대표	4	2.4
대표/국장	1	0.6
대표/담당	4	2.4
담당	6	3.5
비언론	2	1.2
합계	170	100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153	53.9
대표이사	15	5.3
국장	11	3.9
부장	13	4.6
차장	1	0.3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81	28.5
비언론	8	2.8
기타	2	0.7
합계	284	100

제 3 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 53.2%, 원고패소율 46.8%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53.2%, 원고패소율은 46.8%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이 54.3%, 항소심이 45.7%, 상고심이 60.0%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급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1심	38 (54.3)	32 (45.7)	70 (100)
항소심	16 (45.7)	19 (54.3)	35 (100)
상고심	12 (60.0)	8 (40.0)	20 (100)
환송후심	1 (100.0)		1 (100)
합계	67 (53.2)	59 (46.8)	126 (100)

※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 94.5%가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35건과 상고심 20건을 합산한 55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7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5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소심 94.5%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승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2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1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5.5%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4.3%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5.7%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이 95.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분	빈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35 (100)	16 (45.7)	17 (48.6)	2(5.7)	
상고심	20 (100)	11 (55.0)	8 (40.0)		1(5.0)
합계	55 (100)	27 (49.1)	25 (45.5)	2 (3.6)	1 (1.8)
		52 (94.5)		3 (5.5)	

※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은 정정청구 40.2%, 반론청구 46.7%, 손배청구 45.1%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정정보도청구 40.2%, 반론보도청구 46.7%, 추후보도청구 100%, 손해배상청구 45.1%, 기사삭제청구 71.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사과편지 발송과 사죄광고 게재 청구가 2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전체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44.3%로 나타났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정정보도	37 (40.2)	55 (59.8)	92 (100)
반론보도	7 (46.7)	8 (53.3)	15 (100)
추후보도	3 (100.0)		3 (100)
손해배상	69 (45.1)	84 (54.9)	153 (100)
기사삭제	5 (71.4)	2 (28.6)	7 (100)
사과		3 (100.0)	3 (100)
합계	121 (44.3)	152 (55.7)	273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53.4%로 나타나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의 경우 53.4%였고, 명예/신용 훼손이 42.9%, 초상권 침해가 8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이 1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로는 전교조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1]이 있었고,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뉴스 제보자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2],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해당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사건[3] 등이 있었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명예	55 (53.4)	48 (46.6)	103 (100)
명예/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100.0)	1 (100)
명예/신용	3 (42.9)	4 (57.1)	7 (100)
명예/초상	1 (50.0)	1 (50.0)	2 (100)
신용	1 (33.3)	2 (66.7)	3 (100)
초상	4 (80.0)	1 (20.0)	5 (100)
초상/사생활	1 (100.0)		1 (100)
초상/사생활/음성	1 (100.0)		1 (100)
저작권		2 (100.0)	2 (10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단적 단결권	1 (100.0)		1 (100)
합계	67 (53.2)	59 (46.8)	126 (100)

※ ( )안의 숫자는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가합42520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가단150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공인 61.5%, 일반인 59.3%로 나타나

9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사건 중 원고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적인물이 69.2%로 가장 높았고 일반인이 59.3%, 공직자가 53.8%(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은 61.5%)였으며, 기업이 44.4%, 시민단체가 11.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언론사는 승소율이 0%였으며, 나머지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공직자	7 (53.8)	6 (46.2)	13 (100)
공적인물	9 (69.2)	4 (30.8)	13 (100)
일반인	32 (59.3)	22 (40.7)	54 (100)
국가기관	4 (66.7)	2 (33.3)	6 (100)
공공단체	3 (75.0)	1 (25.0)	4 (100)
정당		1 (100.0)	1 (100)
일반단체	3 (60.0)	2 (40.0)	5 (100)
시민단체	1 (11.1)	8 (88.9)	9 (100)
종교단체	2 (50.0)	2 (50.0)	4 (100)
기업	4 (44.4)	5 (55.6)	9 (100)
언론사		6 (100.0)	6 (100)
교육기관	2 (100.0)		2 (100)
합계	67 (53.2)	59 (46.8)	126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정치인		2 (100.0)	2 (100)
연예인	4 (100.0)		4 (100)
기업가	1 (100.0)		1 (100)
언론인		1 (100.0)	1 (100)
기타	4 (80.0)	1 (20.0)	5 (100)
합계	9 (69.2)	4 (30.8)	13 (100)

※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주간신문, 월간지 등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높았으나 일간신문, 방송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승소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뉴스통신 80.0%, 월간지 66.7%, 방송 52.4%, 인터넷매체 47.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간신문은 32.8%로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일간신문 중에 중앙종합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은 26.2%로 일간신문 평균 승소율 32.8%보다 6.6% 낮았다. 그리고 방송 중에 중앙방송의 원고승소율은 50.0%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인터넷매체는 언론사 닷컴이 56.3%로 인터넷신문 36.0%보다 원고승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일간신문	19 (32.8)	39 (67.2)	58 (100)
주간신문	19 (82.6)	4 (17.4)	23 (100)
월간지	4 (66.7)	2 (33.3)	6 (100)
방송	11 (52.4)	10 (47.6)	21 (100)
뉴스통신	4 (80.0)	1 (20.0)	5 (100)
인터넷매체	27 (47.4)	30 (52.6)	57 (100)
합계	84 (49.4)	86 (50.6)	170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일간지 종별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중앙종합	11 (26.2)	31 (73.8)	42 (100)
지역종합	4 (44.4)	5 (55.6)	9 (100)
일반경제		3 (100.0)	3 (100)
스포츠	2 (100.0)		2 (100)
특수일간	2 (100.0)		2 (100)
합계	19 (32.8)	39 (67.2)	58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중앙	8 (50.0)	8 (50.0)	16 (100)
민방		1 (100.0)	1 (100)
케이블	3 (75.0)	1 (25.0)	4 (100)
합계	11 (52.4)	10 (47.6)	21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인터넷신문	9 (36.0)	16 (64.0)	25 (100)
언론사닷컴	18 (56.3)	14 (43.7)	32 (100)
합계	27 (47.4)	30 (52.6)	57 (100)

※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은 50.0%, 방송 뉴스는 38.5%

소제기 대상기사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이 40.0%였으며, 방송매체는 뉴스 35.8%, 시사・고발프로그램과 교양・정보프로그램이 각각 75.0%로 나타났다.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스트레이트	65 (50.0)	65 (50.0)	130 (100)
스트레이트/사설		3 (100.0)	3 (100)
스트레이트/사설/칼럼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사진	1 (100.0)		1 (100)
사설	2 (50.0)	2 (50.0)	4 (100)
사설/논평		2 (100.0)	2 (100)
칼럼	2 (66.7)	1 (33.3)	3 (100)
사진		3 (100.0)	3 (100)
독자투고	1 (100.0)		1 (100)
기타	1 (100.0)		1 (100)
합계	73 (49.0)	76 (51.0)	149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리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뉴스	5 (38.5)	8 (61.5)	13 (100)
시사 · 고발	3 (75.0)	1 (25.0)	4 (100)
교양 · 정보	3 (75.0)	1 (25.0)	4 (100)
합계	11 (52.4)	10 (47.6)	21 (100)

※ ( )안의 숫자는 %

제 4 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건수를 언론사별로 나눈 후에,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산하면 153건이다. 이 153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5.1%

손해배상청구사건 153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은 6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5.1%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 빈도	처리결과	
	원고일부승	원고패
153 (100.0)	69 (45.1)	84 (54.9)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의 평균액은 1억 9,229만 원, 중앙액은 5,000만 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앙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사하였다.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다. 최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하였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9,229만 원이었고, 중앙액 5,000만 원, 최빈액 5,000만 원, 최저액은 200만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53건 중 67건(43.8%)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19억 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원) /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53	192,299,941	50,000,000	50,000,000	2,000,000	1,9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358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69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358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약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300만 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전교조 교직원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으로 3,439명에게 총 2억 7,512만 원이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69건 중 항소심 판결은 15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10건이었다. 위 상소심 25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항소심의 경우 원심 인용액을 감액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한 경우가 3건, 증액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고, 상고심의 경우 10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원) /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69	23,585,274	10,000,000	3,000,000	1,000,000	275,12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가 42.0%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이하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상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되 5천만 원 범위 내인 경우가 29.0%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원) / 빈도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1천만	1천만 초과 ~2천만	2천만 초과 ~5천만	5천만~
69 (100.0)	29 (42.0)	7 (10.1)	10 (14.5)	20 (29.0)	3 (4.4)

※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은1,706만 원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빈도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이 46.0%로 나타났으며, 인용액의 평균액은 1,706만 원이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침해된 경우가 2억 7,51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상권과 함께 다른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원소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예	126	58	46.0	17,060,345
명예/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0	0	0
명예/신용	8	2	25.0	119,800,000
명예/초상	3	2	66.7	1,500,000
신용	5	0	0	0
초상	5	4	80.0	3,790,970
초상/사생활	1	1	100.0	15,000,000
초상/사생활/음성	1	1	100.0	90,000,000
저작권	2	0	0	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단적 단결권	1	1	100.0	275,120,000
합계	153	69	45.1	23,585,274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 인용액의 평균액은 1,779만 원, 공인은 2,316만원

원고유형별 원고승소율(빈도 5건 이하는 제외)은 공직자가 62.5%, 공적인물이 53.3%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50.0%로 나타났다. 언론사는 원고승소율이 0%에 그쳤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개인의 경우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이 2,316만 원으로 일반인 1,779만 원보다 537만 원 높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가 2,530만 원이었고, 공적인물은 2,050만 원이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 교육기관이 1억 1,98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단체가 4,000만 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개 인	공직자	16	10	62.5	25,300,000
	공적인물	15	8	53.3	20,500,000
	일반인	70	35	50.0	17,793,825
단 체	공공단체	3	2	66.7	45,000,000
	정당	4	0	0	0
	일반단체	7	3	42.9	9,000,000
	시민단체	12	4	33.3	40,000,000
	종교단체	4	2	50.0	3,000,000
	기업	13	3	23.0	21,666,667
	언론사	7	0	0	0
	교육기관	2	2	100.0	119,800,000
합계		153	69	45.1	23,584,274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정치인	2	0	0	0
연예인	5	5	100.0	23,000,000
기업가	1	1	100.0	15,000,000
언론인	1	0	0	0
기타 유명인	6	2	33.3	17,000,000
합계	15	8	53.3	20,5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중앙종합일간지는 1,464만 원, 중앙방송은 2,039만 원으로 나타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19.4%, 중앙방송이 35.7%, 인터넷매체가 44.2%였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뉴스통신이 1억 2,48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에는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1] 이어서 케이블TV 3,106만 원, 인터넷매체 2,991만 원, 특수일간지 2,75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 인용액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일간	중앙종합	36	7	19.4	14,642,857
	지역종합	9	4	44.4	18,000,000
	일반경제	3	0	0	0
	스포츠	2	2	100.0	5,000,000
	특수일간	2	2	100.0	27,500,000
	소계	52	15	28.8	15,966,667
방송	중앙	14	5	35.7	20,392,776
	민방	1	0	0	0
	케이블	4	3	75.0	31,066,667
	소계	19	8	42.1	24,395,485
주간신문		21	17	81.0	11,529,412
월간지		6	4	66.7	14,750,000
뉴스통신		3	2	66.7	124,800,000
인터넷		52	23	44.2	29,918,261
합계		153	69	45.1	23,585,274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57.4%로 전체 피고승소율보다 약간 높아

손해배상청구사건 153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94건(6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빈도는 54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57.4%였다. 이는 손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1가합25881 판결

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승소율 54.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리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53	94 (100.0)	54 (57.4)	40 (42.6)

※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83.4%

언론사건에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원고 패소)된 84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되어 기각한 경우가 70건(83.4%)이었다. 적법한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는 6건이었고, 이익형량을 통해 피해자의 법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가 1건, 부제소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한 경우도 1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기각한 경우 2건 등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빈도	비율(%)
진실성	43	51.2
진실성/상당성	14	16.7
진실성/공익	1	1.2
상당성	12	14.3
적법의견	5	5.9
적법의견/평가저하 아님	1	1.2
평가저하 아님	2	2.4
동의	2	2.4
소멸시효기간 경과	2	2.4
부제소 합의	1	1.2
기타	1	1.2
합계	84	100

제 5 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원고승소율은 40.2%

정정보도청구사건 92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37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0.2%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빈도는 8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 빈도	처리결과	
	원고일부승	원고패
92 (100.0)	37 (40.2)	55 (59.8)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각하사유

진실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64.8%을 차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5건(64.8%)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적법한 의견표명, 평가저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3건(5.6%)이었다. 참고로 기각된 54건 외에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건 있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빈도	비율(%)
진실성	33	61.1
진실성/상당성	2	3.7
상당성	1	1.9
적법의견	2	3.7
평가저하 아님	1	1.9
기타	15	27.8
합계	54	100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6.7%

반론보도청구사건 15건 중에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7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6.7%로 나타났다. 이 중 반론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 빈도	처리결과	
	원고일부승	원고패
15 (100.0)	7 (46.7)	8 (53.3)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사건 중 기각된 사건은 8건으로, 원 보도내용이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경우가 4건(50.0%),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원 보도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다며 기각한 경우가 2건(25.0%),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라며 기각한 경우가 2건(25.0%)이었다.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1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명한 사건은 45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0건, 주간지 12건, 월간지 2건, 방송 6건, 뉴스통신 2건, 인터넷매체 13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한 보도별로 분류하면 정정보도 35건, 반론보도 5건, 정정 및 반론보도가 2건, 추후보도가 3건이었다.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 주문 상의 보도문의 보도위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추후보도	계
일간	8	2			10
주간	9			3	12
월간	2				2
방송	4		2		6
뉴스통신	1	1			2
인터넷매체	11	2			13
합계	35	5	2	3	45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5.6%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6.7%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34건(75.6%)이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5건(11.1%)이었다. 그 밖에 주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건(13.3%)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은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9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2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초기화면이 1건으로 총 12건(26.7%)이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하였다.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도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34	75.6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5	11.1
명시하지 않음	6	13.3
합계	45	100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분	보도위치	빈도	비율(%)
정기간행물	1면	9	20.0
	1면외	10	22.2
방송	첫머리	2	4.4
	후반	1	2.2
인터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14	31.1
	초기화면에 게시	1	2.2
공통	명시하지 않음	8	17.8
합계		45	1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달도록 한 것이 27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바로잡습니다' 형식이 7건(15.6),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6건(13.3%), 등의 순이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5건(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자 초과가 12건(26.7%), 300자 이하가 11건(24.4%),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7건(15.6%)으로 나타났다.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빈도	비율(%)
정정보도문	22	48.9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4.4
반론보도문	5	11.1
…에 대한 정정보도문	6	13.3
바로잡습니다	7	15.6
기타	3	6.7
합계	45	100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빈도	비율(%)
300자 이하	11	24.4
301~400자	15	33.3
401~500자	7	15.6
500자 초과	12	26.7
합계	45	100

제 6 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7건 중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 소송건 170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73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분석대상 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14.7%로 대략 7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비율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17.4%, 반론보도청구 53.3%, 추후보도 청구 66.7%, 손해배상청구 9.2% 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 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정보도	92	16	17.4
반론보도	15	8	53.3
추후보도	3	2	66.7
손해배상	153	14	9.2
기사삭제	7		
사과	3		
합계	273	40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92.9%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40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28건의 경우, 원고승소는 26건(92.9%)이고 원고패소는 2건(7.1%)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은 100.0%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4건의 경우는 모두 원고가 패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성립이 된 사건을 살펴보면, 위원회에 정정 또는 반론으로 조정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이후,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분분이었고, 이 중 6건은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직권 조정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	2	0
	피신청인 이의신청	9	7	2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7	17	0
조정불성립결정		4	0	4
조정성립		8	6	2
합계		40	32	8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명예훼손 관련 배상액 평균, 위원회 206만 원, 법원 1,706만 원
초상권 침해 관련 배상액 평균, 위원회 207만 원, 법원 379만 원

2011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은 214만 원, 중앙액은 135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은 2,358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48건 중 20건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두 기관의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이 206만 원, 중앙액이 125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은 1,706만 원, 중앙액은 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이 207만 원, 중앙액이 145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은 379만 원, 중앙액은 3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48	2,147,826	1,350,000	1,000,000	100,000	20,000,000
인용액	69	23,585,274	10,000,000	3,000,000	1,000,000	275,120,000

〈표 5–4〉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20	2,060,000	1,250,000	1,000,000	100,000	10,000,000
인용액	58	17,060,345	11,000,000	3,000,000	1,000,000	50,000,000

〈표 5–5〉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3	2,076,923	1,450,000	3,000,000	500,000	5,000,000
인용액	4	3,790,970	3,281,940	1,600,000	1,600,000	7,000,000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26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1-01-11	2009가단97387	서울남부	1심	손배	㈜ 노컷뉴스 외 1명	기각
2	2011-01-12	2009나5922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5인	인용
3	2011-01-13	2008다6097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1인	인용
4	2011-01-13	2010가합7444	의정부지방	1심	정정/손배	㈜ 포천신문사 외 1인	인용
5	2011-01-14	2009가단502098	서울중앙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7인	기각
6	2011-01-18	2010나28946	수원지방	2심	손배	㈜ 기독교텔레비젼	인용
7	2011-01-19	2009나98623,98630 (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 ㈜ 외 2인	기각
8	2011-01-20	2010가합10162	광주지방	1심	추후/손배	함평신문 (유)	인용
9	2011-01-21	2010가합13094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 이천신문 외 1	인용
10	2011-01-26	2010가합2581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8인	기각
11	2011-01-26	2010가합7395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이투데이 외 2인	인용
12	2011-01-27	2010가합2425	의정부지방	1심	손배	이○○ 외 1인	인용
13	2011-01-27	2010다94373	대법원	3심	손배	㈜ 문화방송	기각
14	2011-02-01	2010나10502	대전지방	2심	손배	이○○	인용
15	2011-02-09	2010가합5590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기각
16	2011-02-09	2010가합60573	서울중앙	1심	반론	㈜ 조선일보사	인용
17	2011-02-09	2010나54001	서울고등	2심	손배	㈜ 매경닷컴	기각
18	2011-02-10	2009가단79447	서울동부	1심	손배	이○○ 외 2인	인용
19	2011-02-16	2008나94464	서울고등	2심	정정	㈜ 하나로신문	인용
20	2011-02-16	2009가합13455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	㈜ 뉴시스 외 5	인용
21	2011-02-24	2010다8403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22	2011-03-18	2010나47294	서울고등	2심	손배	이○○	기각
23	2011-03-25	2010나8124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24	2011-03-25	2010가단240815	서울중앙	1심	손배	노○○ 외 2	기각
25	2011-03-30	2010가합12094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외 1인	기각
26	2011-03-31	2010가합2057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에스비에스 외 1인	기각
27	2011-04-01	2010가단15011	의정부지방	1심	손배	㈜ 문화방송	인용
28	2011-04-07	2010나37599	수원지방	2심	손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외 1명	인용
29	2011-04-13	2009가단44481	서울서부	1심	손배	㈜ 법보신문사 외 2인	기각
30	2011-04-15	2010가합868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 로이슈	기각
31	2011-04-15	2010가합8693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	기각
32	2011-04-15	2010가합871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	기각
33	2011-04-15	2010가합8723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4	2011-04-15	2010가합870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1인	기각
35	2011-04-15	2010나71754	서울고등	2심	정정	㈜ 중앙일보사 외 1	기각
36	2011-04-21	2009나14267	서울고등	2심	손배	㈜ 참언론 외 1인	기각
37	2011-04-22	2010나6240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전주방송 외 4명	기각
38	2011-04-28	2011다1633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 ㈜ 외 2인	기각
39	2011-04-29	2010나180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참언론 외 4인	인용
40	2011-05-04	2010가합8392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매일경제신문사 외 1	기각
41	2011-05-12	2010가합17827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1인	기각
42	2011-05-12	2010가소5056613	서울중앙	1심	손배	㈜ 동아일보사 외 1인	인용
43	2011-05-12	2010가합20588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이비뉴스 외 1인	기각
44	2011-05-18	2009가합9836	창원지방	1심	손배	박○○	기각
45	2011-05-19	2010가합606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인	인용
46	2011-05-20	2010나44452	서울중앙	2심	손배	㈜ 조선일보사	기각
47	2011-05-25	2011가합25881	서울중앙	1심	손배	㈜ 뉴시스	인용
48	2011-05-26	2011다13623	대법원	3심	손배	㈜ 기독교텔레비젼	인용
49	2011-05-27	2010나13727	서울고등	2심	손배	김○○	인용
50	2011-06-03	2010가합1227	대구지방경주지원	1심	손배	㈜ 경도일보	인용
51	2011-06-08	2010가합92389	서울중앙	1심	손배	㈜ 조선뉴프레스 외 1인	인용
52	2011-06-10	2011다25176	대법원	3심	손배	㈜ 매경닷컴	기각
53	2011-06-16	2010가단207764	서울중앙	1심	손배	중앙엠앤비 ㈜ 외 2인	인용
54	2011-06-22	2011가합58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코리아타임스 외 1인	인용
55	2011-06-23	2010가단13111	대전지방	1심	손배	㈜ 동아일보사 외 1인	기각
56	2011-06-23	2010가소30769	창원지방 김해시법원	1심	손배	㈜ 스포츠조선	인용
57	2011-06-30	2010가합1958	의정부지방	1심	정정/손배	황○○ 외 4인	인용
58	2011-07-06	2010가합106837	서울중앙	1심	손배	전○○	기각
59	2011-07-07	2011가합789	광주지방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 전광일보	인용
60	2011-07-07	2011나1939	서울남부	2심	손배	㈜ 노컷뉴스 외 1명	기각
61	2011-07-13	2010가합10573	창원지방	1심	정정/손배	㈜ 매일신문사	기각
62	2011-07-13	2010가합6184	전주지방	1심	정정/손배	㈜ 전북중앙신문 외 1인	인용
63	2011-07-13	2010가합120338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외 5	인용
64	2011-07-13	2010가단36256	인천지방부천지원	1심	손배	권○○ 외 1인	기각
65	2011-07-14	2011다1751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5인	인용
66	2011-07-14	2011다35364	대법원	3심	손배	이○○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67	2011-07-15	2011가합2135	서울서부	1심	정정	㈜ 오마이뉴스	인용
68	2011-07-18	2011다3246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69	2011-07-20	2011가합3011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문화일보사 외 2인	기각
70	2011-07-26	2010가합42520	서울중앙	1심	손배	㈜ 동아닷컴 외 1인	인용
71	2011-07-28	2011다41628	대법원	3심	손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외 1명	인용
72	2011-07-28	2011다31799	대법원	3심	손배	이○○	인용
73	2011-08-11	2010가단4389	창원지방 밀양지원	1심	손배	㈜ 이환경뉴스 외 1인	기각
74	2011-08-24	2011가합1869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2인	인용
75	2011-08-25	2011가단28883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외 1인	인용
76	2011-08-26	2010나56939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 문화방송	인용
77	2011-09-02	2009다52649	대법원	3심	정정/반론	㈜ 문화방송	인용
78	2011-09-07	2011가합4878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3인	인용
79	2011-09-08	2010다5076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동아일보사	인용
80	2011-09-08	2011다40410	대법원	3심	정정	㈜ 중앙일보사 외 1	기각
81	2011-09-09	2011나1292	광주고등	2심	추후/손배	함평신문 (유)	인용
82	2011-09-09	2008가합8127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중앙일보사 외 4	인용
83	2011-09-16	2011나31470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외 1인	기각
84	2011-09-21	2011다27745	대법원	3심	정정	㈜ 하나로신문	인용
85	2011-09-22	2010나946	서울남부	2심	손배	정○○	기각
86	2011-09-28	2011가합1046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 참언론 외 1인	인용
87	2011-09-28	2011가단34020	서울남부	1심	손배	㈜ 기독신보 외 1인	인용
88	2011-09-29	2011다46760	대법원	3심	손배	㈜ 조선일보사	기각
89	2011-09-29	2011다54655	대법원	3심	손배	김○○	인용
90	2011-10-12	2011가합44370	서울중앙	1심	손배/기사삭제	㈜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7인	인용
91	2011-10-13	2011다4496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참언론 외 4인	인용
92	2011-10-14	2011나25410	서울중앙	2심	손배	㈜ 동아일보사 외 1인	인용
93	2011-10-20	2011나6848	의정부지방	2심	손배	㈜ 문화방송	인용
94	2011-10-21	2010가단458487	서울중앙	1심	손배	변○○	인용
95	2011-10-26	2011가단20687	서울남부	1심	손배	뉴데일리 ㈜ 외 4인	기각
96	2011-10-27	2011가합321/2011가합338(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기각
97	2011-10-27	2011가합284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인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98	2011-11-02	2010가단41242	의정부지방고양지원	1심	손배	㈜ 조선일보사 외 2인	기각
99	2011-11-04	2010나12103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사과	㈜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100	2011-11-10	2009가합19353	서울남부	1심	손배/사죄광고	㈜ 에스비에스 외 11인	기각
101	2011-11-16	2010가합7578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참언론 외 3인	인용
102	2011-11-23	2011가단3560	춘천지방영월지원	1심	손배	㈜ 연합뉴스 외 7	기각
103	2011-11-25	2010나9769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1인	인용
104	2011-11-30	2011가합6236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조선일보사 외 1	기각
105	2011-11-30	2009가합123546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인천경향신문 외 1인	기각
106	2011-11-30	2009가합55315	서울중앙	1심	손배	㈜ 문화방송 외 2인	기각
107	2011-12-01	2011나74866	서울고등	환송 후심	정정/반론	㈜ 문화방송	인용
108	2011-12-01	2011나14046	인천지방	2심	손배	권○○ 외 1인	기각
109	2011-12-07	2011가합97626	서울중앙	1심	정정	㈜ 뉴시스	인용
110	2011-12-08	2011다82483	대법원	3심	추후/손배	함평신문 (유)	인용
111	2011-12-08	2011다81138	대법원	3심	정정/반론/ 손배/ 기사삭제	㈜ 문화방송	인용
112	2011-12-09	2008나468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신 경인매일 외 2인	인용
113	2011-12-15	2011나7714	창원지방	2심	손배	㈜ 스포츠조선	인용
114	2011-12-15	2011가합7431	서울북부	1심	손배	한겨레신문 ㈜ 외 1인	인용
115	2011-12-15	2011나2343	부산고등(창원)	2심	손배	박○○	기각
116	2011-12-16	2011가단307371	서울중앙	1심	손배	㈜ 일요서울신문사	인용
117	2011-12-21	2011가합27092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 중앙일보사 외 2인	인용
118	2011-12-28	2011가합2471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문화일보	기각
119	2011-12-29	2010가단16018	광주지방 순천지원	1심	손배	㈜ 디지털 조선일보 외 4인	인용
120	2011-12-30	2011나14017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1인	기각
121	2011-12-30	2011나4243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인	기각
122	2011-12-30	2011나16488	서울고등	2심	손배	㈜ 노컷뉴스 외 1인	기각
123	2011-12-30	2011나4242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인	기각
124	20111-12-30	2011나4240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 오마이뉴스 외 1인	기각
125	2011-12-30	2011나4241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 외 1인	기각
126	2011-12-30	2011나99226	서울고등	2심	손배	이피씨라인 ㈜ 외 1인	인용